

창원상공회의소

514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(신월동)
055-210-3031 / soon@cwcci.or.kr / 회원지원팀 / 정순우

창 상 회 : 제 0181 호 2019. 5. 14
수 신 : 회원업체 대표이사(대표)
참 조 : 담당 부서장
제 목 :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회

1.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회의소에서는 최근 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회원업체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‘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회’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

- 다 음 -

- 가. 일 시 : 2019. 6. 5(수) 14:00 ~ 16:00
나. 장 소 :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
다. 강 사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장
라. 내 용 : **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관한 사항**

① 위험의 외주화 방지

-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/ 유해·위험작업 도급 금지

② 안전보건 책임 강화

- 원청의 안전·보건조치 위반 처벌 강화 등

마. 참 가 비 : **무료**

바. 참가신청 : 5월 31일(금)까지 창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행사/교육 게시판에서 **“온라인 신청”**

사. 문 의 처 : 회원지원팀 정순우(☎055-210-3031)



첨 부 : 산업안전보건법 홍보 포스터. 끝.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



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!

시행 시기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. 1. 16.부터 시행
-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: 2021. 1. 16.부터 시행
-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: 2021. 1. 1.부터 시행



자세한 내용 >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> 정보공개 > 법령정보 > 최근 제·개정 법령 > 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」 검색

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



법의 보호대상 확대

- 근로자 + "노무를 제공하는 자"
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배달종사자 등)



MSDS 제출(노동부) 및 비공개 정보 심사

-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비공개 시 (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, 대체명칭과 함유량으로 기재)



노동자 직업중지권 명확화

-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 가능 (불리한 처우 금지)

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합니다



원청의 책임범위 확대

-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·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·관리 하는 장소로 확대



유해·위험작업 도급 금지

- ▲도급작업, ▲수은, 납, 카드뮴의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작업, ▲허가 대상물질의 제조, 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



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 신설

-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계획·설계·시공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
- 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·해체·작동되는 경우 안전·보건조치 실시

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됩니다



노동자 사망 시 형량 가중

- 5년 내에 2회 이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형의 1/2까지 가중
-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처벌 강화 (10억원 이하의 벌금)



원청의 안전·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

- 안전·보건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

수감명령 제도 도입

- 노동자의 사망으로 유죄 선고 시 200시간 내의 수감명령 병과 가능